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의안 번호	23-127
----------	--------

제출년월일 : 2023.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결정 (안 제5조 ~ 제8조)
- 라. 지원결과 관리 및 비용환수 (안 제9조 ~ 제10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8. 24. ~ 9. 13.(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5)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1.):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 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차재현
연 락 처	02-3153-8863